

수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592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A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용길

변론 종결2024. 5. 2.

판결 선고2024. 6. 27.

주 문

- 가. 피고와 E(F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8,723,3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881,449원, 원고 B, C에게 각 13,920,9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F생) 사이에 2022. 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7,077,148원, 원고 B, C에게 각 18,051,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망 G는 2012. 11. 30.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68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3. "E은 망 G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2) 망 G는 2020. 6.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원고들은 2022. 2. 26. E에 대하여 83,441,095원[= 원금 3,000만 원 + 2013. 4. 4.부터 2022. 2. 26.까지 3,251일의 지연손해금 53,441,095원(= 3,000만 원 × 3,251일/365일 × 20%, 원 미만 버림)]의 판결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H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그 지상 이 사건 제2, 3 부동산, 경량철골조 박공지붕(판넬) 단층 창고시설 1층 28.8㎡(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H은 2022. 2. 26.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I, E, J이 있었는데,

피고, I, E, J은 2022. 4. 15.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4. 27. 접수 제14408호로 2022. 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4. 27. 접수 제144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2022. 2. 26.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는 K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2. 3.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E의 재산상태

1) E의 적극재산 피고와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적극재산으로 ㉠ 시가 48,843,626원(= 420,100원/㎡¹) × 523.2㎡ × 2/9, 원 미만 버림)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 ㉡ 시가 1,380만 원(= 6,210만 원²) × 2/9)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주택 부분 중 9분의 2 지분, ㉢ 시가 6,208,580원(= 27,938,610원³) × 2/9)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중 9분의 2 지분 및 이 사건 제3, 4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 ㉣ 주식회사 L에 대한 예금채권 46,234원, ㉤ M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42,845원 합계 68,941,285원이 있었다(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173,425,302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 주장의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E의 소극재산 피고와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소극재산으로는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83,441,095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7,898,300원이 있어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 7호증의 1, 2,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인 E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이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기여분에 관하여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망 H이 E에게 사전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망 H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망 H은 E에게 1억 원 이상을 증여하였다)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E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E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이 E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N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E의 어머니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20.부터 E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E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가 사망하면 E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2. 3.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2. 현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은 96,526,027원[= 원금 3,000만 원 + 2013. 4. 4.부터 2024. 5. 2.까지 4,047일의 지연손해금 66,526,027원(= 3,000만 원 × 4,047일/365일 × 20%, 원 미만 버림)]이다[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시가는 2,663,197원(= 27,938,610원 × 96m²/223.8m²4)) × 2/9,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은 93,862,830원(= 96,526,027원 - 2,663,197원이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2023. 1. 1. 당시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시가는 48,843,626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주택 부분 중 9분의 2 지분의 시가는 1,380만 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 중 9분의 2 지분의 시가는 2,746,422원(= 27,938,610원 × 99.0m²/223.8m²5)) × 2/9, 원 미만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48,723,382원[= 65,390,048원(= 48,843,626원 + 1,380만 원 + 2,746,422원) - 16,666,666원(= 7,5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48,723,382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96,526,027원) 중 작은 금액인 위 48,723,382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 A은 20,881,449원(= 48,723,382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은 각 13,920,966원(= 48,723,382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경옥

별지

1)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50,400원,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20,100원이다(갑 제7호증의 1). 피고와 E은 2022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사건 제2, 3, 4 부동산도 같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 연면적 185.58㎡ 중 2층 86.58㎡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은 6,210만 원이다(갑 제7호증의 2).

3)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층 99.0㎡, 이 사건 제3 부동산 연면적 96㎡(= 1층 76㎡ + 2층 20㎡), 이 사건 제4 부동산 28.8㎡ 합계 223.8㎡의 시가표준액은 27,938,610원이다(갑

제7호증의 3).

4)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층 99.0m², 이 사건 제3 부동산 연면적 96m², 이 사건 제4 부동산 28.8m² 합계 223.8㎡ 중 이 사건 제3 부동산 96m²

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층 99.0m², 이 사건 제3 부동산 연면적 96m², 이 사건 제4 부동산 28.8m² 합계 223.8㎡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층 99.0m²